

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제외 사유서

1. 제외대상: 자동안내장치(ARS시스템)
2. 관련근거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3. 중소기업자간 경쟁(제한)에 의하지 않는 사유
 - 자동안내장치(ARS시스템)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지만,
 - 본 사업에 포함된 제품은 기설치된 교환설비의 보조장비가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동시에 개통되어야 하는 통합시스템으로, 도시철도 특성상 관제전화, 인터폰, 비성전화, 철도통합무선망(LTE-R) 단말기, 관제방송 등 각종 관제업무시스템과 유기적인 연동을 위하여 현장 환경에 맞는 커스터 마이징이 필요함.
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·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여 통합 발주하고자 함.

2026. 07. 27.

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(인)

